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795
----------	-------

제출년월일 : 2025. 8. 12.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군 복무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전역 후 사회복지 지원을 지원해 지역 내 정착 유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병역의무 이행은 「병역법」에 따른 군부대 입영 복무를 말함
- 현역병 및 장기·중기·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범위를 정함
- 군 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중 현역병, 장기·중기·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함

다. 예우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시민 홍보, 시 문화행사 초대·예우·참여기회 등의 제공
-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시 설치·운영·관리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경 또는 면제
- 혜택 지원 기간은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현역병은 군 입영 복무 기간 동안이며 제대군인은 군 복무기간의 상당기간으로 함

라. 지원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현역병은 복무확인서 또는 휴가증을 제시하도록 함
- 제대군인 청년은 별도 신청을 통해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1】**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2】**

다.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마.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5. 6. 25. ~ 2025. 7. 15. (20일간)

바. 기타 참고사항

1) 방침결정문 : **【붙임 4】**

【붙임 1】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지원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병역의무 이행”이란 「병역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에 입영하여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5.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6.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총개월수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

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현역병
2. 장기복무 제대군인
3. 중기복무 제대군인
4. 의무복무 제대군인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산시민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청년 홍보
2. 시 문화행사 초대·예우·참여기회 등의 제공
3.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등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
4. 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면제
5.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39세 이하의 연령 범위 내에서 현역병은 군부대 입영 복무기간으로 하며, 장기·중기·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

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현역병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또는 휴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장기·중기·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 현역병, 장기·중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이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청년정책관
입 안 자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지원팀장	김유성 (481-2295)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제3자 제공 목적 : 안산시 공공시설물 사용료 등 감경, 면제 등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등의 개인정보와 병무기관의 입영 및 전역일자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대일, 전역일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혜택 제공기간까지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업무 관계기관 • 안산시 •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도 잡아바 어플라이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⑤ 신청내용 허위 기재 등 사유가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